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- 26호

서울특별시 강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」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3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화재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나.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다.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라. 지원 제외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tnk10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